

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허훈 의원)

2024. 9.

기후환경본부

-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입니다.

-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
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
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
의안번호 제1995호,
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
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통한 시민의
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,

-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시에서
자치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의 신설 개정에는
동의하나,

- 다만, 시장이 구청장에게 ‘해당 자치구에서 제작·배포한 홍보
및 교육 자료를 요구’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신설조항은 기존
조례 제7조제3항 ‘시장이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
요구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유사하여 중복 가능성이 있는 바,
생략이 가능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.

아울러, 현행 조례 제7조제3항 중의 ‘유해생활폐기물’을 법률상 용어인 ‘생활계 유해폐기물’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, 동 일부개정안에 포함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